

# 2021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운용계획안 검 토 보 고

## I. 회부경위

1. 의안번호 : 제2435호
2. 제 출 자 : 서울특별시교육감
3. 제출일자 : 2021. 5. 25.
4. 회부일자 : 2021. 5. 28.

## II. 제안이유

1.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필요 재원을 안정적으로 적립·조성하기 위함
2.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사업은 향후 5년간 보통교부금이 매년 교부될 예정이나, 공공건축심의, 재정투자심사, 공유재산심의 등 사전절차 이행기간이 많이 소요되어, 당해 연도내 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어, 이를 기금으로 조성하여 안정적으로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3.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9조 규정에 따라 「2021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서울특별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

### III. 주요내용

#### 1. 기금 설치개요

o 설치년도 : 2021년

o 기금 조성 총규모: 385억원

(단위: 천원)

기금명	'20년도 말 조성액(a)	'21년도 기금운용계획		'21년 말 조성액 (d=a+b-c)	비고
		수입(b)	지출(c)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	38,459,744	0	38,459,744	

### IV. 참고사항

1. 관계법령 :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서울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2.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3. 협의 : 해당사항 없음
4. 기타 : 해당사항 없음

## V. 검토 의견(수석전문위원 김창범)

### 1. 제안경위 및 주요내용

- 동 조례안은 2021년 5월 25일 서울특별시교육감에 의해 의안번호 제2435호로 제출되어 2021년 5월 28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 동 조례안은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에서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 2. 주요 검토의견

#### 가. 기금 개관

- 동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이하 ‘기금’)은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교육시설법’)<sup>1)</sup>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는 법정기금으로서 대규모 재원이 필요한 노후화된 교육시설의 개선 및 교육시설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한 안전점검 등에 소요되는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서울시교육청에서는 교육비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등으로 발생한 수입을 통해 재원을 확보할 계획에 있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교육부는 2021년부터 2025년까지 ‘그린스마트미래학교’의 교부금을 매년 교부할 예정에 있는바, 해당 사업비에 대한 장기적인 관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1) 제30조(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의 설치 등) ① 교육감은 관할 교육시설의 환경개선을 위하여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따라서 동 기금은 노후화된 교육시설의 개선을 위한 재원의 확보와 교육부 교부금의 안정적 확보를 담보하고자 조성된 것입니다.

#### 나. 수입계획

○ 2021년도 기금의 수입액은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384억 1천 1백만원, 이자수입 4천 9백만원을 포함하여 총 384억 6천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는 동 기금 설치·운용 조례 제3조제1항에<sup>2)</sup> 따른 기금 조성재원으로 별도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한편, 동 기금의 수입재원인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384억 1천 1백만원은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에 건설비(그린스마트스쿨 설계용역비)로 세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 그러나 동 기금의 수입재원이 되기 위해서는 건설비가 아닌 기금전출금(820-01)으로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어야 하는바, 이는 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제출된 추경안의 예산편성으로는 동 기금으로의 전출이 불가능한바,

정상적으로 동 기금을 운용하기 위해서는 추경예산안의 세출항목에 대한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다. 지출계획

○ 한편 동 기금은 실제 사업진행을 위한 별도의 지출계획이 없는바, 이는 동 기금이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되었고, 기금의 목적에 맞는 시설환경 개선비용 등의 지출을 위해서는 타당성 조사 및 각종

---

2) 제3조(기금의 조성) ① 제2조에 따른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2.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3.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기부금
4. 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5. 그 밖의 수입금

투자심사, 그리고 사전기획 등의 사전절차가 장기간 소요될 것으로 사료되는바, 2021년도에 별도의 지출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것은 타당한 측면이 있을것으로 사료됩니다.

## 라. 끝으로

○ 동 기금운용계획안은 「지방재정법」 제33조에 따라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기금의 운용방향 등을 반영하고, 이를 지방재정계획심의회 의 심의 후 의회에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 기금운용계획안은 중기재정계획(2021년~2025년)에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 또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 제8조의2<sup>3)</sup>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안에는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가 첨부되어 있어야 하나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가 첨부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제출되었습니다.

○ 이는 동 기금이 「교육시설법」에 따라 설치되어야 하는 법정기금이 나,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한 위임사항을 규정한 조례는 지난 제 300회 임시회(2021.5.24.)를 통해 제정되었는바,

현재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동 기금운용계획안을 포함시키고, 기금운용계획안에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를 첨부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측면이 있었던 것으로 사료됩니다.

○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및 기금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한 후 예산을 편성·수립하는 것이 원칙이며<sup>4)</sup>, 기금운용계획안 제출시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을 포함시는 것 또한 추경의 경우에도 적용된다

3) 제8조의2(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작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이하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에는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4) ‘2021~2025년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기준’, 행정안전부(2020.7)에 따르면, “추경 시에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한 후 편성하는 것이 원칙이나, 투자사업비의 경우,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추경예산에 먼저 반영하고 다음연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 가능”이라는 예외 사항을 정하고는 있으나 기본적으로는 추경 시에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한 후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원칙임.

할 것인바, 서울시교육청은 이러한 절차를 반드시 준수할 수 있도록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운용계획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관계 법령

##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교육시설법 )

[시행 2020. 12. 4.] [법률 제16678호, 2019. 12. 3., 제정]

제30조(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의 설치 등) ① 교육감은 관할 교육시설의 환경개선을 위하여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교육비특별회계의 출연금
2.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3.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기부금
4. 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5. 그 밖에 시·도 조례로 정하는 수입금

③ 교육감은 제2항제1호의 출연금으로 일정 금액을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④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31조(기금의 사용)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한다.

1. 교육시설의 안전점검, 유지보수 및 확충 사업
2. 제1호 외의 사업으로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3. 제1호에 따른 사업으로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의 방식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
4.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학생을 위한 교육시설을 개축하는 사업
5. 기금의 조성·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의 지출
6. 그 밖에 교육시설의 안전점검과 유지보수를 위하여 조례로 정한 사업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 약칭: 지방기금법 )

[시행 2021. 4. 6.] [법률 제17836호, 2021. 1. 5., 일부개정]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①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기금과 「지방공기업법」 제19조 제2항에 따른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은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5. 7. 24.>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기금의 설치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5. 7. 24.>

③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재정법」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15. 7. 24.>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의 존속기한 및 통합·폐지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5년 단위의 기금정비계획을 매년 작성하여 이를 「지방재정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